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

2017. 2. 13. 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출범식)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주최(기념세미나)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국회의원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송기석(국민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최명길(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관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목 차

Ⅰ. 개요

1. 축사

1) 국회의원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4

2)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6

2. 행사세부일정 ····· 8

Ⅱ.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1. 추진위 소개 ····· 10

2. 추진위 경과 ····· 14

3. 추진위 활동계획 ····· 17

4. 추진위 기자회견문 ····· 19

Ⅲ. 기념세미나

1. 발제

1)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및 현황(김양은) ····· 22

2) 기존 미디어교육지원법 평가 및 법제정 방안 모색(노영란) ····· 38

2. 토론(가나다 순)

1) 김경희(한국방송학회 미디어교육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 49

2) 류지영(국회의원 유은혜 보좌관) ····· 52

3) 박한철(덕성여고 교사) ····· 54

4) 복성경(미디어교육 강사, 부산 민언련) ····· 56

5) 윤정록(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실장) ····· 59

6)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 62

3. 참고자료 ····· 66

●●● 축사



국회의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유은혜 입니다.

먼저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의 출범과 기념세미나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최근 십수년간의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생산자-소비자 구분이 명확했던 전통적인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 모두가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누구나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1인 1미디어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디어환경의 변화속도 만큼 미디어의 폐해 또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편파적인 뉴스와 가짜뉴스가 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사이버폭력이 횡행하며, 건설적인 토론대신 상호비방이 난무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부작용이 사회문제로까지 불거지면서, 민주적이며 주체적인 미디어 사용자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학계와 시민사회계에는 일찍부터 미디어 사용자의 민주주의적 기본소양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왔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노력 끝에 미디어교육법안이 발의되어 19대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쉽게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추진위원회 발족과 토론회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미디어교육법 제도화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대 국회에서 미디어교육 법제화가 성사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발족식과 토론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추진위원회 강형철, 강혜란, 문철수, 오기현, 최성은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국회에서 미디어교육지원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자신이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던 만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미디어 활동가들이 미디어교육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디어교육지원법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고 곳곳에 풀뿌리 미디어공동체들이 만들어졌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는 소중한 기관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이사장의 전횡과 각종 비리 및 비위로 인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고, 오히려 건전한 미디어교육을 가로막기까지 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미디어교육이 이렇게 한계를 드러냈고 학교나 민간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확대를 위한 논의도 정체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 기구가 설립된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특히 학계와 시민단체, 일선 교육현장은 물론 방송인들까지 아울러 구성되니 더 기쁩니다.

우리는 미디어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은폐하고 비호하는 현실을 목격해 왔습니다. 미디어 활용의 기회가 거대 자본과 정치권력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 참사입니다. 반면, 촛불광장을 통해 수많은 미디어들이 직접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하는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서라도 누구나 미디어교육을 받고 미디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년을 끌어온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의 노력이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운데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가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저도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행사세부일정

· **축사**

  – 국회의원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인사말**: 강형철(한국방송학회장/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공동대표)

· **전체사회**: 허경(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간사단체)

· **세미나사회**: 권장원(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1부]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1. 출범경과 보고 및 활동계획

  – 최성은(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장/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공동대표)

2. 추진위 출범 기자회견문 발표 및 질의응답

  –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공동대표)

  – 오기현(한국PD연합회장/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공동대표)

3. 기념사진 촬영

[2부]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및 법제정비방안 세미나

○ 발제 1.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및 현황

- 김양은(건국대학교 KU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교수)

○ 발제 2. 기존 미디어교육지원법 평가 및 법제정 방안 모색

- 노영란(매체비평 우리 스스로 사무국장)

○ 종합토론(가나다순)

- 김경희(한림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한국방송학회 미디어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 류지영(국회의원 유은혜 보좌관)
- 박한철(덕성여고 교사)
- 복성경(미디어교육 강사/부산민언련)
- 윤정록(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실장)
-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 플로어 토론

●●● 추진위 소개

●●●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정보에 접근·해석하고 정보를 직접생산하며, 서로 소통함과 동시에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정책의 체계화·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보다 민주적인 디지털 미디어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현장과 분야에서 미디어교육 관련 활동을 펼쳐온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진위 개요

○ 명　　칭 :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 활동목표 : 미디어교육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교육 관련 주체 간 공동논의·공동대응을 위한 민간중심의 논의/집행 단위

○ 참여대상 : 미디어교육 추진위의 취지에 동의하며 미디어교육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 주요활동 : 미디어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공유, 미디어교육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및 법안제정,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제반활동, 미디어교육 정책 모니터링 및 의견개진, 2018년 대선공약 제안 등

○ 참여방법 : 참여단체 소개서 제출

조직구성

○ 공동대표, 열린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장, 법안제정소위원회, 간사단체로 구성함

○ 공동대표는 참여단체 중 분야별 안배를 통해 적정인원으로 구성하며, 대외적으로 추진위를 대표함

○ 열린운영위원회는 추진위의 논의/결정/집행분담 단위로, 참여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

○ 법안제정소위원회는 추진위 차원의 법안마련을 위한 논의/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단위로 열린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식 구성할 예정이며, 외부전문가 참여가능

○ 간사단체는 열린운영위 참여단체와 협력/분담을 통해 추진위의 운영실무를 담당하는 단체

ㅇ 공동대표 및 간사단체 현황(2017년 2월 현재)

- 공동대표 : 강형철(한국방송학회장), 문철수(한국언론학회장), 최성은(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장),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오기현(한국PD연합회장) ※추가예정
- 간사단체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운영방식

○ 운영위원회는 원하는 참여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공유/조율되어 합의될 수 있도록 열린구조로 운영하고자 함. 단, 운영위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당일 불참을 이유로 번복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하며 민주적이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함

○ 간사단체가 주로 실무를 조율/담당하되 참여단체의 자발적이고 책임있는 실무분담과 협업을 통해 운영하고자 함

○ 운영재원은 참여단체 분담금 및 참여단체의 자원(재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임

○ 세미나/토론회/정책연구/공동사업 등 미디어교육정책 활성화 및 미디어교육지원법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친하여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고자 함

참여단체 현황(2017**년** 2**월** 3**일 현재**)

구 분	단체명 또는 성명	비고
학회	한국미디어교육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	
방송현업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PD연합회	
미디어교육지원시설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교사단체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시민단체	매체비평우리스스로	
	한국여성민우회	

추진위 1차 운영위원 개최 안내

○ 일 시 : 2017년 3월 10일 오후6시

○ 장 소 : 목동 방송회관 9층 방송기자연합회

○ 내 용 : 추진위 향후 활동계획 및 미디어교육 관련 대선공약 제안 건

●●● 추진위 경과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 경과

▷ 미디어교육지원 관련 법제정 경과

- 2007년 이경숙의원 미디어교육진흥법안 발의. 문화부 중심의 정책재편 방식에 대한 쟁점, 당시 미디어교육관련 시민단체의 부정적 의견[1] 등으로 무산
- 2012년, 2013년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발의
  : 2012년 8월 최민희 의원안과 2013년 9월 김희정 의원안 발의.
  : 방통위 또는 문화부 중심의 정책재편 방식에 대한 쟁점이 발생했으며, 당시 다양한 미디어교육활동방식/내용/주체 포괄 어려움, 미디어교육 교강사 관련 이슈 미포함 등의 문제가 지적됨.
  : 2013년 기존 문방위가 미방위와 교문위로 분리되면서 최민희안은 미방위, 김희정안은 교문위로 이관.
  :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두 법안 자동폐기

1) 미디어교육 정의와 목적의 협소함, 법 적용 범위의 타당성 근거와 분산적 지원체계를 아우르는 통합적 체계 부재, 미디어교육진흥의 비체계성 등이 문제로 지적됨

▷ 지금까지의 미디어교육 관련 법안은 미디어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차원의 협의(합의) 및 법안준비과정에서 관련주체 간 협의, 유관 정책부처 간 협의 등의 과정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자유학기제 등 학교미디어교육의 확산, 지역미디어센터 등 미디어교육 지원기관(시설)의 확산/활성화 등으로 인해 미디어교육 전반에 대한 체계적 법/정책 정비의 필요성 제기('15년 12월 교육부에서 미디어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특히, '15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출범과 함께 방통위 차원의 미디어교육 지원정책 재편을 위한 연구 및 논의 진행 중이며, 문화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도 미디어교육 지원, 지역미디어센터지원 등 사업은 확대 추세임.

▷ 이에,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법체계 정비를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차원의 주도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법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공감대/공동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경과

▷ 준비모임 1차('16년 6월 28일)

- 미디어교육 지원 법체계 정비 관련 현황 및 정비 필요성 공유

▷ 유은혜의원실(교문위/더민주) 미팅('16년 7월 19일)

-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정비 방안 협의
- 교문위 차원의 논의 시 협력방안(세미나 및 법안발의 등) 협의

▷ 준비모임 2차('16년 7월 28일)

- 미디어교육지원 법체계 정비 방안 검토

▷ 준비모임 3차('16년 8월 12일)

- 미디어교육지원 법체계 정비 방안 검토

▷ 준비모임 4차(‘16년 9월 23일)

- 관련 학계 관계자 참여
- 미디어교육 관련 학계(학회), 방송현업, 학교 교사, 미디어교육 지원/수행 전문시설(지역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 다양한 민간영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출범을 진행하고, 관련 실무를 추진하기로 함.
- 미디어교육 관련 학회 및 지역미디어센터의 행사/세미나 등에서 미디어교육 관련 이슈들을 확인/협의 할 수 있도록 공동기획을 추진하기로 함.
- 민간차원의 방향/방안들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기관과 및 국회와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16년 12월 3일)

- 한국미디어교육학회 미디어교육전국대회 ‘미디어교육의 미래와 전망’의 프로그램으로 진행.
-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준비모임의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방안을 협의함.

▷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17년 1월 6일)

- 한국언론학회 후원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계/시민단체/현업단체/지원시설단체 등이 참여하여 미디어교육 추진위원회 구성방식과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함.
- 추진위 출범식행사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 기존 준비모임을 ‘(가칭)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준)’으로 전환함.

▷ 추진위 출범 및 기념세니나 개최와 관련 국회의원 협의

- 유은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회 교문위 및 미방위 의원실과 협의 진행

▷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준)’ 회의 개최(‘17년 2월 3일)

- 추진위 명칭/조직구성을 확정하고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 개최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함.
-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로 명칭을 확정함.

●●● 추진위 활동계획(안)

● 미디어교육 관련 활동주체 간 정보공유 및 소통

- 학계, 전문지원시설, 학교교사, 미디어교육 교강사, 미디어교육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영역/지역에서 활동하는 미디어교육 관련 제단체의 활동내용과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공감대 및 공동의 정책안을 만들기 위한 활동추진
- 회의/간담회 등 논의의 장 마련,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대한 세미나/토론회/포럼 개최 등

●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마련과 제정추진 및 정책제안 활동

- 최근 변화된 기술/정책 환경, 미디어교육관련 제주체의 요구들을 고려한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마련 및 법제정 추진
- 미디어교육의 철학과 원칙, 미디어교육 지원정책체계, 미디어교육 지원시설(기관)활성화 방안, 미디어교육 교강사 양성 및 재교육 방안, 학교미디어교육 및 생애주기별미디어교육 등 종합적 추진방안,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정책 등 정책제안
- 대선시기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공약생산 및 제안

●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을 위한 활동

– 시민이 원하는 미디어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수렴함으로써 폭넓은 공감대와 지지기반 마련
– 미디어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대중 캠페인 등

●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사업 추진

– 미디어교육 관련 활동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교육의 저변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기획 및 추진
– 추진위 참여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추진위 활동취지에 부합한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의 연계 고려

●●● 출범 기자회견문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출범 기자회견문

미디어교육은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기초 교육이자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이다.

새로운 미디어 시대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한국인들은 평균 3시간가량 TV를 보고, 1시간 반가량 스마트 폰을 사용한다. 10대 청소년의 경우 무려 하루 평균 7시간을 모바일과 TV시청 등에 할애한다. 시민들은 이제 TV를 넘어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를 직접 만들고, 공유하고 소통한다. 미디어 이용자는 더 이상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즉석 현장 중계를 통해 뉴스를 생성 전파하는 또 하나의 미디어이다. 디지털 기반의 미디어는 빠른 시간 내에 시민 중심의 여론을 형성, 조직하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난제가 남아 있다.
수많은 방송 채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유무선망, 세계 1위의 스마트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지상파, 편파 시비의 종편, 인터넷 막말과 여론조작, 중독과 개인정보 유출 등 우리의 미디어환경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수많은 정보와 볼거리가 넘쳐나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미미한 수준이다. 청소년들이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에

막대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적절하게 즐길 수 있는 훈련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디어 공급자 부문의 개혁과 함께 미디어 이용자를 위한 교육이 절실한 이유다.

유럽과 영미권 등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시민들의 미디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공교육에서부터 미디어의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자기 표현 능력을 배양하고, 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민주주의의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정보처리와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디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윤리와 안전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한 마디로 디지털 기술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 2012년과 2013년에 잇따라 미디어교육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정부 부처의 갈등, 교육 주체의 의견 수렴 미비 등으로 사회적 관심은 물론,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최근 자유학기제 실시로 학교 미디어교육이 확산되고 있고, 지역미디어센터가 잇따라 설립되면서 미디어교육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인사와 운영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편법이 드러났고, 미디어 강사에게 정부 비판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등 적지 않은 물의를 빚고 있다. 미디어교육을 총괄하는 제도 역시 부재하다. 방송통신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 미디어교육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통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 주도의 미디어교육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에 미디어교육관 관련된 각 민간단체는 제대로 된 미디어교육의 전면적인 실시를 위해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약칭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를 발족하고자 한다. 학회, 방송 현업인, 교사, 미디어교육교·강사 및 사회단체 들은 민간 차원의 주도적인 논의를 통해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공동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생애주기별, 종합적인 미디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 강화로 민주주의를 실현함과 아울러 이를 4차 산업혁명과 교육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를 올바로 활용한다면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듯 청소년들은 영상 디지털 기기를 올바로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것이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은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고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세상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지원법은 하루 속히 제정되어야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요구에 화답하여 현재의 난제들을 극복하고 내일의 희망을 일구어나가는데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

2017**년** 2**월** 13**일**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참여단체**]

▷ **학회**: 한국미디어교육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

▷ **방송현업단체**: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PD연합회

▷ **미디어교육지원시설**: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 **교사단체**: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 **시민단체**: 매체비평우리스스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발제1.]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및 현황

건국대학교 KU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교수

김양은

Media literacy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및 현황

김양은
건국대학교 KU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교수



미디어교육을 둘러싼 개념들

미디어리터러시

디지털리터러시

영상리터러시

소셜미디어리터러시

기술리터러시

미디어교육

영화리터러시

정보리터러시

학교미디어교육

콘텐츠리터러시

ICT리터러시

뉴스리터러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기술 발달과 미디어교육(미디어리터러시)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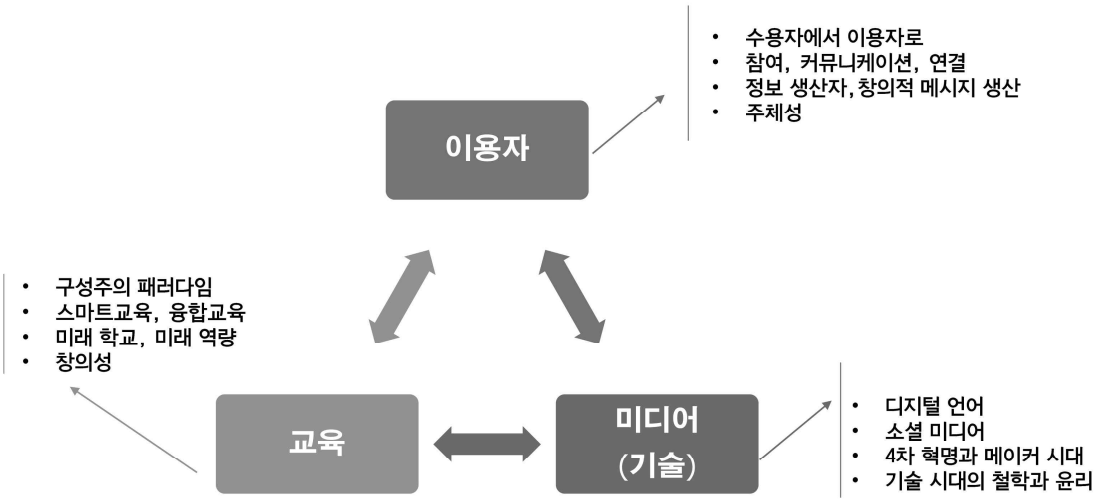
쿠텐베르크 시대	영상기 시대	텔레비전 시대	컴퓨터 시대	연결미디어 시대
쿠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 문자리터러시	에디슨을 중심으로 한 영상기술 시각리터러시 (Visual Literacy)	텔레비전 시스템 개발 및 방송 실현 텔레비전 리터러시	정보화 디지털 컴퓨터, 정보, 기술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시민성

출처 : KISO Journal, http://journal.kiso.or.kr/?attachment_id=906**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미디어교육(미디어리터러시) 개념

- 미디어리터러시 개념은 텔레비전의 등장과 함께 'TV바로보기', '비판적인 시청기술' 등으로 정의
- 유네스코에 의해서 미디어리터러시는 '미디어교육 (Media Education)'으로 통일되어 사용되길 제기되었으며, (1)독자적인 영역, (2)수업이나 교육의 보조도구로서 사용되는 시청각 교육 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의
-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었는데, 초기의 미디어리터러시 개념에는 공통적으로 (1)미디어접근성, (2)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의 2가지를 개념에 담고 있음
- 미디어 기술발달에 따라서 미디어리터러시가 '언어 ' 관점에서 접근되면서 '읽기', '쓰기 ' 로 정의하기 시작

미디어리터러시 개념규정을 위한 키워드



미디어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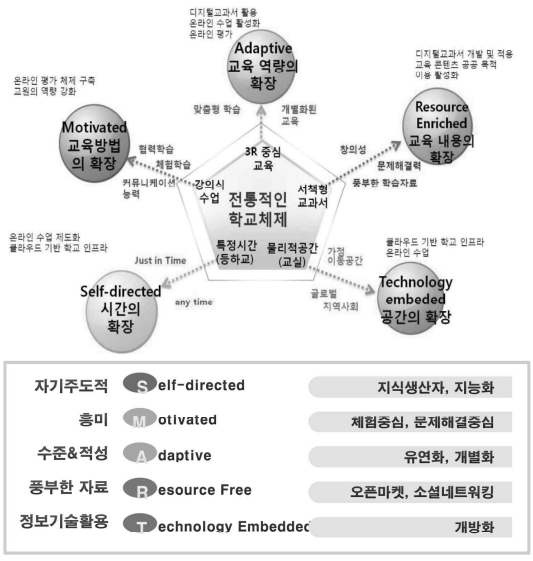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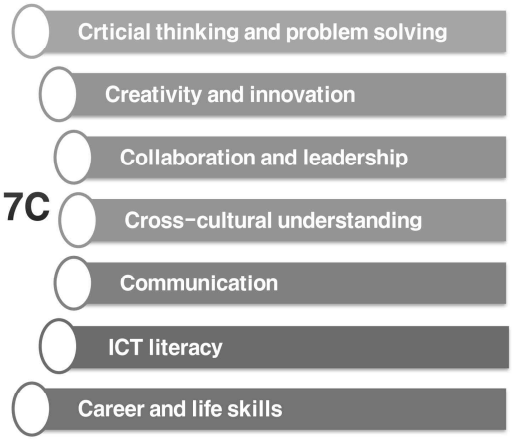
교육환경 : The Future of Thinking (2010) : 미래 학교



- **자기주도**(self-Learning)
- **수평적 구조**(Horizontal Structures)
- **권위에서 집단 신뢰로**(From Presumed Authority to Collective Credibility)
- **개별화된 교육과정**(A Decentered Pedagogy)
- **네트워크 학습**(Networked Learning)
- **개방된 자료접근 교육**(Open-Sourced and Open-Access Education)
- **연결성과 상호작용 교육**(Learning as Connectivity and Interactivity)
- **평생교육**(Lifelong Learning)
- **모바일 네트워크 교육기관**(Learning Institutions as Mobilizing Networks)
- **유연성**(Flexible Scalability and Simulation)

교육환경 :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의 리터러시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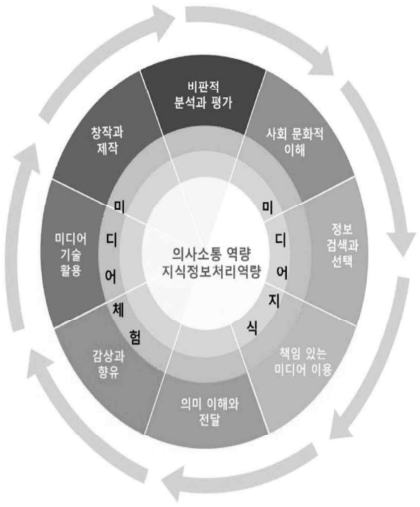
교육환경 :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역량프레임

구분	세부역량
21세기 학제 간 혁신역량	①세계화이해(Global awareness) ②금융, 경제, 경영, 창업관련 리터러시(Financial, economic, business and entrepreneurial literacy) ③시민 리터러시(Civic literacy) ④건강 리터러시(Health literacy) ⑤환경 리터러시(Environmental literacy)
학습 및 혁신역량	①창의 및 혁신 능력(Creativity and Innovation) ②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③소통 및 협업 능력(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정보, 미디어, 테크놀로지 역량	①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②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③ICT 리터러시(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Literacy)
생애 및 경력 개발 역량	①유연성 및 적응성(Flexibility & Adaptability) ②진취성 및 자기주도성(Initiative & Self-direction) ③사회성 및 다문화성(Social & Cross-cultural skills) ④성과창출 및 책임감(Productivity & Accountability) ⑤리더십 및 책무성(Leadership & Responsibility)

* 출처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2009,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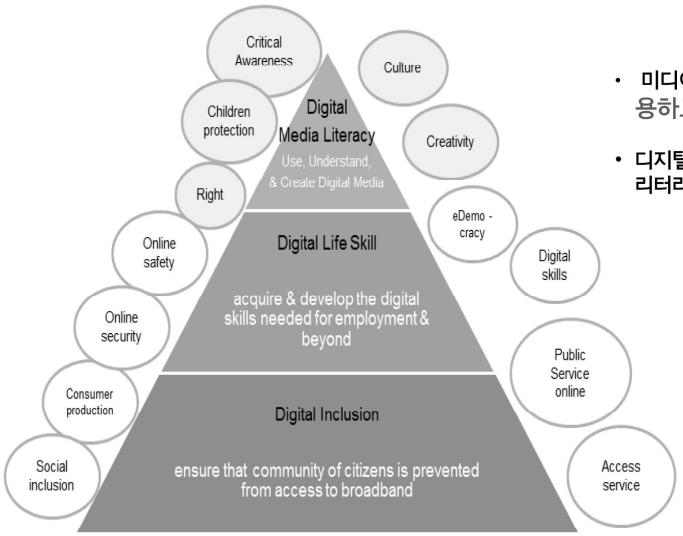
교육환경 : 2015 개정교육과정 : 역량 중심

역량	세부역량
자기관리	• 자아정체성과 자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지식정보처리	•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창의융합적 사고	•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
심미적 감성	•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
의사소통	•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역량
공동체	•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출처 :정현선(2015), 미디어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방안 연구

해외 정책 : 영국 오프컴(Offcom) Digital Britain



- 미디어리터러시의 영역을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하고, 이해하고, 창조하는 것으로 규정
-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역량으로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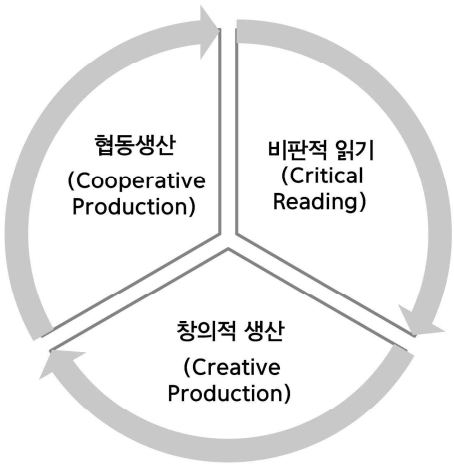
영국 퓨처랩(Futurelab)의 핵심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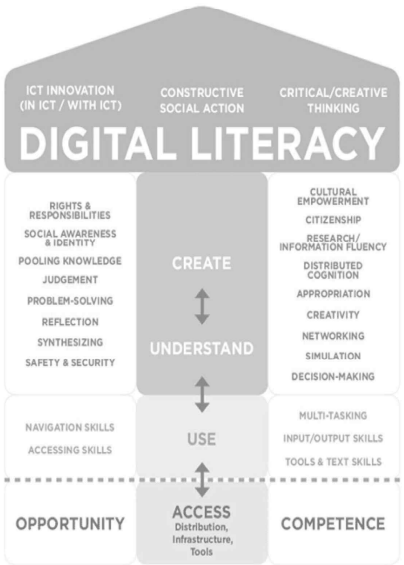
학습과 혁신기술들	정보, 매체 그리고 공학기술	생활과 직업 기술들
• 창의성과 혁신 •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 의사소통과 협력	• 정보문해력 • 매체문해력 • ICT 문해력	• 융통성과 적응력 • 주도성과 자기-방향성 • 사회성과 범문화적 기술들 • 생산성과 책무성 • 리더십과 책임감

해외 정책 : EC 미디어리터러시 정책 : 3 Action Plan



- EC는 디지털미디어(인터넷 등)의 등장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EC 국가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이에 대한 교육내용 등을 총망라하는 보고서를 2007-2010년까지 기획하여 제시함.
- 최종보고서에 기록된 EC의 '디지털시대를 준비하기위한 3가지 액션플랜' 으로 '인터넷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3가지 내용으로 (1) 비판적 읽기(Critical Reading), (2) 창의적 생산(Creative Production), (3) 협동 생산(Cooperative Production) 을 제시함.
- 유럽의 관심은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해서 교육환경의 변화에서부터 최근에는 시민환경의 변화로까지 확산되고 있음.
-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 정책의 방향을 '교육'에서 '자율규제'로, 그리고 '보호'에서 '진흥'으로 변화하고 있음.
- 기술적 도구능력으로서의 보호개념이 아니라, 인터넷 시민으로서의 스스로의 자율적 인터넷 이용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터넷 윤리에 대한 개념이 옮겨가고 있음.

해외정책 : 캐나다 Mnet 에서 Media Smart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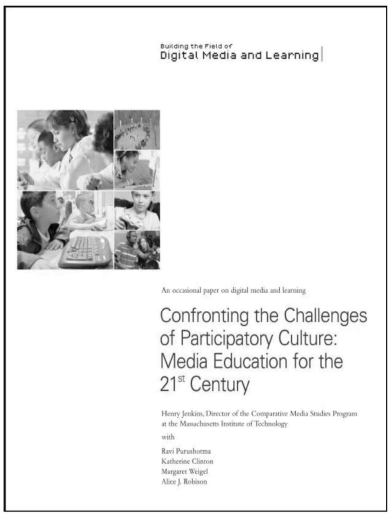


항목	내용
다양한 맥락에서 자신의 정체성 구현하기	•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균형감각 구축하기 • 정체성구축과 의미 형성 •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집단지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참여하기	• 토론에 참여하는 능력 • 다양한 관점들을 이야기하고, 소통하게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함양	• 다양한 의미를 형성하는 방법 • 다양한 의미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 • 권위, 관점, 신뢰 등 다양한 의미를 판별하는 능력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를 윤리적으로 사용, 종합, 창조할 수 있는 능력	• 창의적으로 메시지를 생산해내기위한 디지털 도구의 활용
다양한 수용자와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 다양한 의견 등에 피드백하는 방법

• 사용(Use) :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이해(Understand) : 디지털 미디어 도구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창조(Create) : 디지털테크놀로지를 써서 창조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지식과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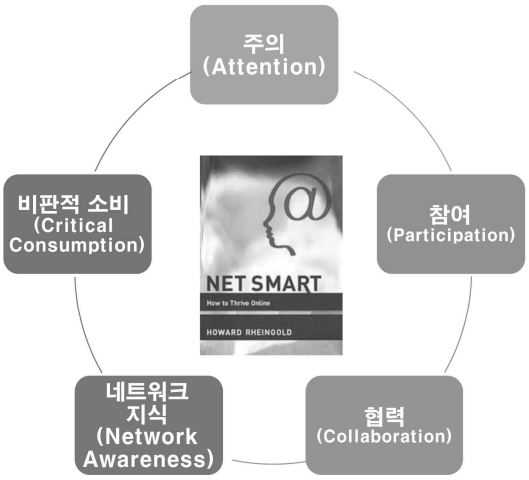
출처 : Mapping Digital Literacy Policy and Practice in the Canadian Education Landscape

확장 : 21st Media Literacy(헨리젠킨스)



- 놀이 능력 Play: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자신 주변의 상황을 가지고 이런 저런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능력
- 수행 Performance: 미디어를 조작 및 참여함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해보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인지하는 능력
- 시뮬레이션 Simulation: 현실 세계가 작용하는 역동적 모델을 해석하고 구성해볼 수 있는 능력
- 전유능력 Appropriation: 미디어 내용을 의미있는 방식으로 취사선택하여 재조합할 수 있는 능력
- 멀티태스킹 Multitasking ; 자신의 환경을 훑어보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두드러진 세부사항을 관심을 전화하는 능력
- 집단 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식을 획득하고 서로의 지식을 비교해 보며 협력하는 능력
- 판단력 Judgment ; 다양한 정보 원천의 신뢰성과 진실을 평가하는 능력
- 범미디어 네비게이션 Transmedia Navigation: 여러 가지 모드를 통틀어 이야기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을 따라 갈 수 있는 능력
- 네트워킹 Networking ; 정보를 찾고, 종합하고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
- 협상력 Negotiation ; 다양한 커뮤니티를 넘나들며 복합적인 관점을 식별하고 존중하며 기존의 규범이 아니라 대안적인 규범들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

확장 : 소셜미디어리터러시 (라인골드, 2015)



출처 : http://www.educause.edu

- 주의 (Attention) : 소셜미디어리터러시 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디지털미디어의 비판적 소비자가 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주의를 집중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 참여 (Participation) : 소셜미디어에 참여할 때, 우리는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활동적 시민이 된다.
- 협력 (Collaboration) :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있으며, 협력과 공유를 통한 문제 해결
- 네트워크 지식 (Network Awareness) : 기술적 네트워크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의 수와 범위를 확장, 전 세계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크화된 온라인 공간에서 평판과 호혜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 비판적 소비 (Critical Consumption) :비판적 소비는 온라인 공간에서 무엇이 신뢰할만하고 누가 신뢰할만한지를 가려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디지털 시민성 & 미디어교육 (호주)

디지털 시민이란?

디지털 기술을 디지털 콘텐츠를 창조하고, 소비하며,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도구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기술에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관계 정립에 있으며, 핵심 원칙은 긍정적으로 개입하고, 온라인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Digital citizenship is about confident and positive engagement with digital technology.

A digital citizen is a person with the skills and knowledge to effectively use digital technologies to participate in society, communicate with others and create and consume digital content.

출처: https://esafety.gov.au/education-resources/classroom-resources/digital-citizenship-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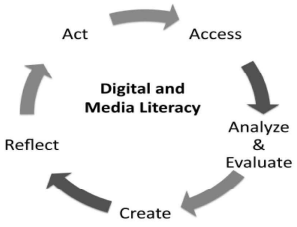
리블(Ribble)의 디지털 시민성

시민성 요소	설명
Digital Access	사회에서의 디지털 참여 및 기회에 대한 접근
Digital Commerce	디지털 경제에서 효과적으로 소비할지 학습
Digital communication	다른 이들과의 의사소통 및 협동
Digital Literacy	높은 수준의 미디어와 정보 처리 능력
Digital Etiquette	행위 또는 절차상의 적절한 행동기준
Digital Law	사회 규칙 준수 및 행동에 대한 책임
Digit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타인의 개인정보와 자유 발언 권리 존중
Digital Health and Wellness	디지털 세계에서의 육체적, 심리적 웰빙
Digital Security	개인적 안전을 보장하는 전자적 예방

미디어교육의 고민

- 미디어기술 발달에 따른 미디어리터러시에 의 개념, 필요성 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
- 미디어리터리시 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것 중의 하나로는 미디어리터러시가 미디어콘텐츠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인간,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디어리터러시는 분석(nalysis), 평가(evalution),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을 포함하는 일종의 비판적 리터러시이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형식과 구조를 설명하는 수단인 "메타언어"의 습득을 필요로 하며, 커뮤니케이션의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맥락과 이러한 맥락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미디어리터러시 자체가 미디어자체의 소통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사회변화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Buckingham, 2003)



미디어리터러시의 교육내용에 들어갈 요소로서 접근, 분석과 평가, 생산, 성찰, 행동이라는 5가지 요소로서 통합적 미디어리터러시 개념을 구축 하고 있으며, 성찰이라는 요소에서는 개인의 메시지 생산 이후에 윤리적 성찰과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사회적 참여 행동 등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음 (Hobb, 2010)

미디어교육의 방향성

시민 역량으로서의 미디어리터러시

- 국내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가 특정매체(혹은 콘텐츠)에 집중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정책, 예산활용 등의 문제로 특정매체(콘텐츠)에 국한된 미디어리터러시가 여러 기관 등에서 분산되어 실행되고 있음
- 이런 접근방식은 미디어리터러시를 향상하는데 제한적 요인이며, 특정 콘텐츠에 대한 개별 능력의 강화는 가능하나, 미디어리터러시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미디어리터러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역량으로서 접근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사회의 시민 역량에서 미디어리터러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보편적 능력으로서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생애주기적, 평생교육적 관점의 접근방식이 요구됨

미디어교육의 방향성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와 참여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 미디어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문제 중의 하나가 미디어접근성(media access)에 대한 논의임
- 디지털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논의해왔음
- 미디어접근성 해소는 미디어교육에 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이며,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 함양으로서 다루어져야함
- 누구에게나 미디어에 접근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미디어 격차해소에 대한 논의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이들 미디어접근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및 참여를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함
- 생애주기에 맞는 미디어교육 설계와 이를 통한 균등한 기회와 참여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미디어교육으로서의 방향성

미디어교육의 방향성

인간 주체성 강화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기술과의 공존시대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리터러시 영역에서도 반영되어야할 요소임
- 퀀텀시대의 도래는 인공지능, 제4차혁명, 메이커시대 등의 키워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사회로의 도래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음
- 인간과 기술의 관계설정에서 인간이 주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고민과 접근이 필요
- 소셜, 스마트, 제4차혁명, 메이커 시대 등의 긍정적 담론에서 논의되어지는 기술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이 높아지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인간의 기술통제력과 관련한 주체성에 대한 논의 필요

미디어교육이 방향성

사회를 비판적으로 읽는 미디어리터러시

- 미디어리터러시의 핵심은 여전히 '비판적 리터러시 능력 ' 에 있으며, 미디어리터러시에서 '비판적 읽기 ' 는 단지 언어에 대한 기능적 문해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특히, 미디어기술(소셜미디어 등)의 발달에 따라서 미디어리터러시 영역에 미디어의 텍스트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는 정체성, 관계, 연결에 대한 사회에 대한 해석능력이 요구됨
- 사회를 읽어냄으로서, 미디어기술이 변화시키는 사회, 영향력 등을 이해할 수 있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한 비판적 리터러시가 가능해짐
- 미디어리터러시에서 사회를 읽어내는 비판적 리터러시 능력은 미디어 이용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리터러시는 미디어 중심 사회에서의 비판적 소비라로서의 역량을 의미

미디어교육의 방향성

참여격차 해소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 미디어기술이 점차 발전해가면서 기술 격차에 대한 논의의 지점이 변화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기술의 도구적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었음. 이런 현상은 2010년 전후의 영국, 유럽의 보고서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
- 기술에 대한 기능적, 도구적 접근성 해소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가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대한 참여격차 해소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적 접근이 필요
-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유투브, 인터넷방송 등의 개념은 개인이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의 등장을 의미함
- 디지털 시대의 비판적 소비자로서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들을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갖추어야하며, 네트워크 능력, 협업 능력 등이 미디어리터러시에서 강조되어야할 참여능력으로 부각

미디어교육이 방향성

성찰과 행위로의 미디어리티러시

- 미디어기술의 발달은 개인이 다양한 미디어콘텐츠를 생산가능하게 하였을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시킬 플랫폼을 소유하게 함
- 과거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리터러시는 미디어의 산업,경제적 소유에 따른 이데올로기, 수용자로서의 권리 등에 집중하면 되었음. 하지만, 이제는 개인이 미디어 플랫폼과 미디어콘텐츠 제작능력을 갖춤으로서 자율규제를 통한 성찰이 요구됨
- 어떤 메시지를 생산할 것인가? 이것이 미칠 영향력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메시지에 담겨서 구성되었는가?
- 미디어 기술과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 인식과 이에 기반한 생산자, 유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성찰적 고민이 필요하며, 이것이 창의적 콘텐츠 생산과 표현성의 확대와 결합되어져야 함

미디어교육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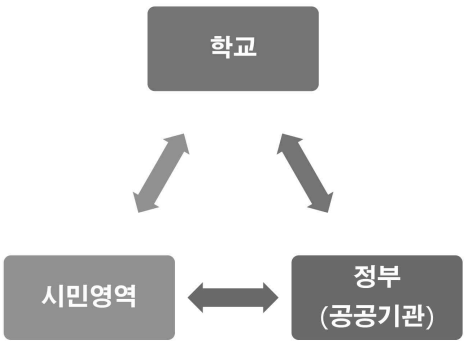
위험과 기회의 균형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 EU Kids Online Report(2009)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온라인활동을 “기회의 최대화와 위험의 최소화”를 논의하며, 기회요소로 사회적 네트워킹과 경험공유, 정체성 표현, UCC제작, 창조와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 초대, 관심공유, 타인과의 접촉, 협업을 언급하고 있으며, 위험 요소로는 개인정보의 추적과 수집, 온라인불링,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 편향적 정보를 언급함
- 이처럼 새로운 미디어 기술은 기회를 주는 많은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따라서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미디어리터러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참여와 배려, 그리고 성찰성에 대한 논의 필요

국내 미디어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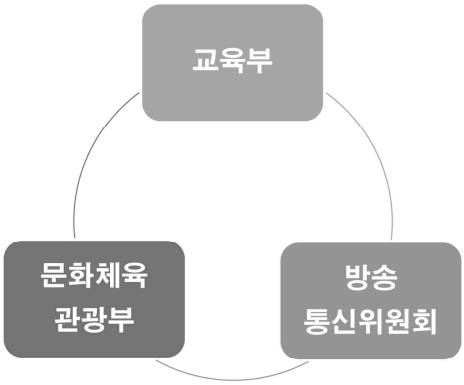
기관명	중심교육	주관부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리터러시, NIE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리터러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디지털)리터러시, 디지털격차해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부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을 통한 미디어교육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지역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을 통한 미디어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리터러시, 콘텐츠 인재양성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동, 청소년의 방송, 통신, 미디어에 에 대한 윤리의식 정립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애니메이션, 영화제작, 연극 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 미디어리터러시 시범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시도지역교육청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고민



-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한국형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합의, (2)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 필요
- 현재까지 학교, 시민영역,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분산된 미디어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의 필요**
- 시민, 학교, 정부라는 **3자간의 협력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노력 필요
-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기적 관심이나, 기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획, 생애주기형 설계** 등이 필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고민



- 현재 미디어교육과 관련해서 콘텐츠 중심으로 주무부처들이 나뉘져있는데, 이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미디어리터러시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시민역량으로 미래 사회의 핵심역량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누어진 미디어교육 창구단일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창구단일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교육법안, 예산, 교육지원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주무부처별로 혹은 콘텐츠중심적으로 진행되는 미디어교육자원 등의 공유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

[발제2.]

기존 미디어교육지원법 평가 및 법제정 방안 모색

매체비평 우리 스스로 사무국장

노영란

기존 미디어교육지원법 평가 및 법제정 방안 모색

노영란(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목 차

1. 미디어교육의 시작과 오늘
2. 미디어교육 지원법 추진 현황 및 법안 제안 이유
3-1. 미디어교육 진흥 법안 - 이경숙의원 대표 발의
3-2. 미디어교육 지원 법안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3-3. 미디어교육 지원 법안 - 김희정의원 대표 발의
3-4. 법안 제기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4. 미디어교육 지원법안 주요 내용 비교
5. 미디어교육 지원 법 제정 방안모색을 위한 제언

1. 미디어교육의 시작과 오늘

- 미디어교육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40여년이 되어가지만 미디어 교육을 뒷받침만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함.
- 80년대 초 최초의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인 최창섭(당시 서강대교수)의 "초중고교생을 위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개발연구"(신문연구, 관훈클럽, 1980)를 통해 소개되었지만 80년대 미디어교육은 서강대와 가톨릭 교회 중심으로 아주 미약하게 진행.
- 90년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 미디어 바로보기 등 미디어감시를 주 내용으로 한 교육으로 시작해 2000년대에 학교미디어교육으로 까지 확산.
-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후보가 대선공약에 미디어교육의 제도화를 삽입. 2000년 통합방송법에 미디어교육 지원(방송발전기금의 용도)을 명시. 이후 공모사업을 통한 다양한 미디어교육 지원도 미디어교육 확산에 기여.
- 2000년대 중반 이후 문화부 영화진흥위원회 ,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 지역MBC등이 전국에 지역미디어센터를 설립, 운영하면서 미디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
- 2000년 중반 이후에는 미디어전문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학교 청소년단체 및 시설, 노인복지관, 여성단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디어교육 발전에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노력 있었음.

1. 미디어교육의 시작과 오늘

- 2009년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학교미디어교육과 최근에는 마을미디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 2014년 방통위는 산하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하나로 모으로 미디어교사 양성 교육까지 미디어교육에 더 집중하기로 함.
- 현재 KOCCA(미디어 전문교사양성교육), 한국언론진흥재단(미디어교육강사 교육),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지역대학/평생교육원 연계) 등에서 미디어교육 강사 육성 및 미디어교육을 주도하고 있음.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미디어교육 강사양성 교육은 기관마다 교육시간, 내용 등 기준이 서로 다르게 진행되며 해당 기관 교육을 이수하면 민간자격증 주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미디어교육에 대한 과잉담론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제도화 방안 등 논의가 많았지만 민간 단위에 지원되던 미디어교육 예산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이들 공공기관에 미디어교육 예산이 집중되면서 개별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되던 미디어교육은 침체되는 역효과를 낳기도.
- 국민들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을 뒷받침할 법률이 미비한 것이 현실. 이처럼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음으로 인해 다양한 기관에서 서로 다른 내용, 수준의 미디어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인적·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없는 상황.

2. 미디어교육 지원법 추진 현황 및 법안 제안 이유

- 미디어교육 지원법은 미디어교육을 먼저 실시했던 미디어 부문보다 문화부 주도하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5년)이 먼저 제정. (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추진.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의 시작은 이경숙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 한 문화관광부 중심의 '미디어교육진흥법안'(2007. 4. 4)이 처음.(이하 이경숙의원안)
- 2012. 8. 3 최민희의원(민주통합당),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발의(방통위 중심. 이하 최민희의원안)
- 2013. 9. 17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새누리당),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발의(문화부 중심. 이하 김희정의원안)
- 이처럼 3번의 미디어교육 지원 법안 발의가 있었음.
- 미디어교육진흥법안이 발의 되자, 당시 미디어교육의 제도화(학교 교과과정 반영, 예산 지원 등)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듯 했지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해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함.
- 5년여가 지나 최민희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미디어교육 지원법안 발의. 이를 계기로 다양한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다시 논의의장으로 나오는 등 미디어교육 지원법에 대한 관심이 부각됨. 그러나 미디어교육 제 주체간 이견이 적지 않아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해. 김희정의원 법안도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함..

3-1) 미디어교육 진흥 법안 이경숙의원 대표 발의

제안이유

현대사회 미디어는 정보전달, 여론형성기능, 오락매체로서 중요한 기능 수행.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오락매체로 자리매김. 미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오락기능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경우 많음. 인터넷, 방송미디어 이용과정에서 다양한 중독현상에 대한 문제 지적. 엽기적이고 화제성 위주인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와 같은 광풍의 문제점 돌출되고 있음.
따라서 학계, 교육현장,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교육 논의 확산…미디어교육 체계화를 위해서 실제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구체적인 교육시스템 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검토가 제기되고 있음.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미디어문화를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함.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 법률 미비로 미디어문화에의 접근 및 문화 향유권이 제대로 행사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미디어교육의 진흥과 미디어문화에의 접근 및 문화 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미디어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3-2) 미디어교육 지원 법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전달이나 여론형성 기능뿐만 아니라 오락매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일상생활에 있어 미디어를 떼놓을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막대함.

또한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하고 갖가지 부작용의 사례가 속출하는 등 국민에게 미디어 전반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미 학계나 교육현장,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논의와 실천들이 확산되었으나 이를 제도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이에 미디어교육을 활성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 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미디어교육 지원법을 제정하려고 함.

3-3) 미디어교육 지원 법안 김희정의원 대표 발의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계, 기술 및 통신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새로운 미디어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도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그 이용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나 지식을 상대에게 전달하거나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 파급효과로 인해 이용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 미디어 사회에서 미디어의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미디어에 대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용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시민단체, 언론계 및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미디어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인 기반은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임.

이에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3-4) 법안 제기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이경숙의원안

성별 연령 지역 신분 계층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지원 체계 마련, 미디어교육 지원법 제정 필요성 제기.

이 법안을 통해 체계화된 미디어교육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유형과 그에 따른 정보를 합리적 비판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유무형의 토대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미디어 매체에의 접근 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이 이법제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어.

그러나 여전히 미디어의 오락매체로서의 기능이 강해지면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역기능 폐해(중독포함)로부터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최민희의원안

제기배경이 이경숙의원안을 보완 미디어교육의 목표를 좀 더 분명히 하고 있음.

오락매체로서 기능 강화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기술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등장으로 부작용 속출로 국민에게 미디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도화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모든 국민이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 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법제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어.

여전히 미디어의 부작용으로부터 보호의 필요성 전제되고 있어

김희정의원안

미디어기술도입으로 새로운 미디어가 보급,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 이로 연한 영향력 커지면서 사회적 부작용 심각, (기술)발전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 커지는데에 대한 우려

특이하게도 이용에 있어 잘못된 정보나 지식을 상대에게 전달하거나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여기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어는 표현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통념이라는 잣대로 낯설게 보기, 비판적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범주를 제한할 수 있는 우려 있음.

4. 미디어교육 지원법안 주요 내용 비교

총칙	이경숙의원안	최민희의원안	김희정의원안
목적	미디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나아가 미디어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1조)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디어교육을 활성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 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1조)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1조)
정의 및 교육원칙	미디어에 관한 건전한 이해와 활용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미디어교육"이라 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를 "미디어교육기관", 이를 수행하는 시설을 "미디어교육시설"이라고 함(안 2조)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에 국민은 누구나 성별 연령 지역 신분 계층 등에 관계없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정치적으로 이용되서는 아니된다(안 3조)	미디어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활용능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미디어교육"이라 하고, 이를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으로 구분하고 미디어교육 시설 및 미디어교육사(미디어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14조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사람) 개념 구체적으로 명시(안 2조) 미디어교육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며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됨(안 3조)	미디어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창의적 활용능력 증진을 통해 소통능력을 제고하는 교육,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으로 구분,미디어교육을 주된 기능으로 실시하는 법인, 단체를 미디어교육단체라 함(안 2조) *최민희 의원의 미디어교육사를 "미디어교육전문인"으로 동일개념정의에 명칭만 변경(안 2조7항)

4. 미디어교육 지원법안 주요 내용 비교

진흥계획 수립 / 활성화	이경숙의원안	최민희의원안	김희정의원안
미디어교육 진흥계획수립(지원총괄) 혹은 활성화	문화관광부장관은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미디어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함(안 6조)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미디어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미디어교육기관 및 미디어교육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미디어교육 진흥계획 수립에 반영함(안 10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미디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6조)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 교과에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창의적 재량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에 미디어교육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질 높은 사회미디어교육을 위하여 미디어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 연구 및 각종 미디어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8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교육부장관, 방통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디어교육 지원정책 총괄(안 5조) 문화부장관, 5년마다 종합계획수립, 문화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6조, 7조) 교육부장관은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위해 초중등교육법 23조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 반영할 수 있어(안 10조)

4. 미디어교육 지원법안 주요 내용 비교

진흥기관	이경숙의원안	최민희의원안	김희정의원안
미디어교육진흥기관 운영/설치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 등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미디어교육자문위원회를 둠(안 7조) 미디어교육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미디어교육 진흥기관을 지정, 운영함, 필요재정 지원할 수 있음(안 8조)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자 상호간의 협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미디어교육협의회를 둠(안 9조)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미디어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미디어교육기관 및 미디어교육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10조)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통위원회 위원장과 교과부장관 소속 하에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9조)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의 협력증진을 위해 시도에 지역미디어교육지원협의회를 설치함(안 11조)	문화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및 기타 미디어교육 진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미디어교육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역 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미디어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9조)

4. 미디어교육 지원법안 주요 내용 비교

교육지원	이경숙의원안	최민희의원안	김희정의원안
지원내용	미디어교육진흥기관 및 미디어교육기관, 미디어교육시설에 대하여 재정상의 지원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11조, 1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1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취약계층을 보호 지원하는 시설, 단체의 미디어교육 을 지원하며, 사회미디어교육에 학교시설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기관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마련(안 13조)
	문화관광부장관은 미디어박물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미디어 체험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음(안 14조)		

4. 미디어교육 지원법안 주요내용 비교

전문인력/ 미디어 교육사 양성	이경숙의원안	최민희의원안	김희정의원안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 미디어교육사 양성	문화관광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미디어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미디어교육사 양성을 위해 진흥기관 국공립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미디어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은 미디어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함(안 15조, 16조, 18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미디어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미디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미디어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14조) 방통위원장으로 하여금 미디어교육사의 양성을 위하여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시설, 교육단체,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미디어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15조) 교육시설과 교육단체에 미디어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17조)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디어교육사로 하여금 학교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18조)	학교의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을 반영하고, 필요한 시책마련 및 시설, 장비를 지원하며, 학교의 장이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을 학교미디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개발,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진흥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강화 수립 시행해야 한다. 문화체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진흥기관,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대학 등을 미디어전문인력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교육에 필요한 경비지수 할 수 있고, 전문인력기관의 지정기준,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비징수 등은 대통령령으로(안 15조) 교육시설, 교육단체는 미디어교육시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함(안 17조)

4. 미디어교육 지원법안 주요내용 비교

	이경숙의원안	최민희의원안	김희정의원안
	보칙 **문화관광부장관, 권한 일부 진흥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안** 19조 **행통위원장, 교과부장관과 협의하여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지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보칙** **지역센터 및 교육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권한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기관, 지정 법인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비용 추계서	**5년간** 1,007**억**(2008~2012) 8조(**미디어교육진흥기관의 지정 운영**, 14조(**미디어박물관 및 체험관 설립 운영**)**에 근거** **미디어박물관,체험관 설립 운영비** 826**억**, **미디어교육기관 지원비 약** 180**억**	**5년간 약** 4200**억**(2014~2018) 7조(**학교미디어교육**, 17조, 18조**에 근거** **학교미디어교육 지원** 3192**억**, **사회미디어교육지원** 978**억**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 및 지역미디어교육진흥협의회는 기존 조직 활용해 운영 가능해…추계대상에서 제외**	**5년간 약** 796**억**(2015~2019) 10조(**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11조(**교원의 연수기회제공**), 12조(**사회미디어교육활성화**), 13조(**경비의보조**), 15조(**미디어교육전문인력양성**)**에 근거** **학교미디어교육 지원 약** 135**억**, **사회미디어교육 지 약** 661**억**

4. 미디어교육 지원 법안 주요내용 비교

이경숙의원안

*미디어교육의 정의와 목적이 너무 협소하게 정리되어 있고, 구체적 구분이 없음. 미디어교육기관 및 시설의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 있고, 미디어교육진흥기관의 위상이 불명확하며, 미디어교육사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법의 적용 범위와 시행 주체의 타당성 근거가 미흡 등 **지원체계**를 아우르는 통합적 체계가 부재. 특히 예산조달 및 운영에 대한 구체성도 떨어짐. 박물관 및 체험관 거립운영에 과도한 예산책정. 필요성 및 효과 의문.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누구나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보장 명시는 긍정적.

이미 미디어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의 관계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는 나머지 두 법안도 마찬가지라 하겠음.

최민희의원안

*2007년 법안에서 미디어교육 정의가 너무 협소하다 문제제기 되었던 부문을 보완. " 모든 국민이 미디어 활용능력..창의적인 표현능력.... 국민의 의사소통 능력...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능력을 **향상**...을 포함.

미디어교육의 구체적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보완하여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으로 구분하는 등 이경숙 의원안을 보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김의원안도 마찬가지

*최의원 안은 다른 법안과 달리 공교육의 교과안으로 통합되는 **병식** 포함

필요성 높지 않으면서 과도한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미디어박물관 및 체험관 건립 **베제**. 긍정적

신설된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 운영 및 예산조달 방안마련 없음. 설효성 의문

김희정의원안

학교미디어교육은 교과부 의무사항 아닌 권고사항.

*최민희 의원의 미디어교육새법 "미디어교육전문인"으로 동일개념정의에 명칭만 변경(안 2조7항) 다른 두 법안에 비해 미디어교육교사 명칭 관련 " 문화체육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미디어교육진흥기관, 지역센터, 교육시설, 대학 등을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 " 할 수 있도록 해 다른 법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칭에 적극성 보이지 않고 있음. 또한 미디어교육 전문인력(교사)의 지위 처우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음.

미디어 컨텐츠(미디어가 생산해가나 유통시키는 콘텐츠산업진흥법 2조1항1호에 따른 콘텐츠 개념을 도입

*이경숙의원안 3조3항 미디어교육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다. 다른 두 법안도 유사한 이해 유사한 조항이 있음. 비판적 이해를 전제하고 있는 미디어교육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 필요

4. 미디어교육 법안 주요내용 비교

미디어진흥기관 지정운영 VS 설치

이경숙의원안

미디어교육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미디어교육 진흥기관 지정 운영

미디어교육 진흥기관은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미디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 단체 가운데 지정.

미디어교육기관 미디어교육시설 및 학교간의 상호연계협력망의 구축운영, 학술연구조사, 미디어교육기관 미디어교육시설에 대한 평가, 전문인력양성및연수, 필요한 시설 장비의 확충 및 구비,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최민희의원안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미디어교육 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미디어교육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조에 따른 미디어교육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미디어교육 지원업무의 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계에 관한 사항, 미디어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심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미디어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해이 필요한 사항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포함 15인이내, 학교미디어교육소위원회와 사회미디어교육소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지위, 소속이 명확해지 않고 위원회와 지역협의회 조직적 관계가 분명해지 않다. 산실 조직면다 기존 조직 활용한 운영이 가능해 비용추계에서 제외, 미디어교육사 운영 비용 역시 기존 시청자권익지원사업(방통위), 영상미디어센터(문체부) 통한 영상산업육성사업에 변영되어 있어 별도 산정해지 않는 등 비용조달 방식에서 현실성 떨어지는 문제 있었음.

김희정의원 안

미디어교육지원체계로 문화체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교과부, 방통위등)이 기존의 관련 기관이나 법인 중앳 미디어교육진흥기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안, 언론제단, 전파진흥원등

지역성 고려, 문체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관, 시도지사 협의거쳐 지역미디어교육센터 지정 제안, 구체적 내용은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미디어교육진흥에 대한 권한부여나 진흥기관의 위상설정 등이 최의원안과 가장 차이나는 부분임.

각법안 공통으로 미디어교육과 관련 있는 국가기관들이 서로 협의 혹은 협의로 미디어교육진흥을 추진하게 되어 있음. 그럼에도 실질적인 국가기관이 정확하게 제안되지 않고 조직적 위상과 모델이 명확하지 않아 법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5. 미디어교육 지원 법 제정 방안모색을 위한 제언

1. 미디어교육은 모든 국민 개개인들이 미디어의 주인으로 삶을 누리기 위한 것.
   미디어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 전구성원이 받아야 할 권리를 갖는 교육으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이해, 활용, 참여(생산자의 지위까지 포함) 과정을 통해 미디어를 통한 창의적 표현 능력을 갖게 해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소통과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2. 미디어교육은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 평생받아야 할 교육
   평생교육으로 전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

3. 누구나 쉽게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절실.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미디어교육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 이를 통해 미디어교육 교과, 커리큘럼, 교재 등 연구개발, 아카이브구축, 전문인력 풀구성, 교육주체들의 상호협력 및 연결 등을 할 수 있는 민간참여가 보장된 시스템이 필요. 이런 내용이 반영된 미디어교육 지원법안 마련 필요.

   3번의 미디어교육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미디어교육 주체들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미디어교육에 대한 지원 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데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미디어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기존 법안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미디어교육 지원법안 필요.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필요. *미디어교육 제도화(법제화)…필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되어야 하는 미디어교육이 일반적이고 획일화 될 가능성 있음. 이에 대한 대안마련 필수.

5. 미디어교육 지원 법 제정 방안모색을 위한 제언

- (1) 이해당사자, 제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
- (2) 미디어교육 정의 및 명확성 제대로 잡아야
  - 기존 법안에는 미디어교육 정의가 협소하게 내려져 있음. 이에 대한 보완 필요. 사회적 합의과정 통해 재정리 필요.
  - 미디어의 역기능으로부터의 보호가 중심이 되는 흐름 넘어서 미디어의 참여주체(창의적 생산주체)가 될 수 있도록
- (3) 미디어교육진흥기관 위상 및 체계적 지원구조 마련
  - 새로운 미디어교육지원기구를 만들 것인지 VS 기존 미디어교육 기관 중 미디어교육지원기관으로 지정
- (4) 주무부처의 문제
- 문화부(이, 김) vs 방통위(최), 소속은 특정부처 중심 vs 특정부처 아닌 국무총리산하 위원회?
- (5) 학교 및 학교 밖을 아우르는 미디어교육 진흥 방안 확보
  - 자율성과 부문별 특성이 담긴 시민사회영역의 미디어교육의 특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 기존 법안대로 라면 시민사회단체 등 소규모단위의 단체들은 미디어교육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 학교미디어교육의 경우, 교사 및 아이들의 상황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교과과정 반영...어려울 수 있어

5. 미디어교육 지원 법 제정 방안모색을 위한 제언

- (6) 미디어교육사?/미디어교육전문인력?에 대한 정의와 운용계획 마련
- 미디어교육강사 자격증(민간 혹은 국가) 부여 VS 자격증 필요 없이 융통성 있는 운영
- 교사양성시스템…양성방향, 역할, 처우, 인증절차, 양성기관, 강사 명칭의 적절성
- 미디어교육강사 자격증 필요하다면 그 기준, 내용은
- 자격증 부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위상/지위와 처우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더 중요
- 현재 작은 교육단위(시민단체 소규모교육단체들의 교육, 교사양성…차단되어서는 안됨
- (7) 예산 확보 및 운용 방안 모색
- 기존 법안들 비용추계서 보면 비현실적 부분들 많아 실효성 의심. 조항들간 상충부분도 마찬가지
- 미디어교육 지원 예산 무엇을, 어디에 지원할 것인가? 분명해야
- (8)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법과의 검토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문화예술전문위원회 등 관련 기구의 설치, 문화예술교육기관의 지원 및 전문인력의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써 미디어교육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방송 영화 광고 출판 등 미디어유형 대부분이 문화산업으로 포함되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적용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미디어교육 지원법 제정시 미디어, 미디어교육의 범주에 대한 고려와 유관 법과의 관계 검토 필요.

[토론]

한국방송학회 미디어교육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경희

민주사회와 정보복지 구현을 위한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의 제도화는 미디어학계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방송학회와 언론학회에서는 여러 차례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해왔지만,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결국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방송학회에서는 지난해 회장에 취임하신 강형철 회장님이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부분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었고, 그에 따라 미디어교육연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미디어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의 발족은 미디어학계에 매우 의미 있고 뜻 깊은 일입니다. 특히 민간 주도로 방송현업인, 지역미디어센터, 시민단체, 교사단체가 뜻을 모아 이런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점에 미디어교육지원법이 왜 더 절실히 요구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미디어교육의 목표와도 관련된 것이기에 추진위를 발족하는 이 날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미디어교육을 국가가 지원하고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과거에도 이런 필요성은 제기되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 특히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정보공유가 민주주의 사회 유지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야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들이 펼쳐져있지만, 누군가는 거기서 소외되고 낙오되어 자신의 의견을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시대의 소통의 장에 모두가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개개인 모두가 가져야합니다.

또 지금은 정보가 곧 자본이 되는 사회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지 못한 소외계층이 정보격차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경제적 격차로 이어져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복지의 차원에서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게다가 미국 대선 상황에서 문제가 됐던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미디어 채널을 통해 가짜뉴스와 가짜정보가 흘러 다닙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스스로가 비판적 이해능력을 갖고 미디어를 접해야합니다.

종합하면, 미디어교육은 비판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미디어를 통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민주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며,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국가가 지원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미디어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용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뉴스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디어학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왔지만,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 현업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님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신문을 제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교육은 미디어교육의 일부이지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교육의 목표를 디지털리터러시의 함양과 민주시민양성이라고 한다면, 미디어에 대한 비판

적 이해와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정보공유가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즉, 교육목표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학계가 좀 더 신중하게 연구해보겠습니다.

또 미디어교사 양성에 대해서도 미디어학계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대학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의 과정은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0여년간 이미 축적된 미디어교육의 노하우들을 모아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방송현업종사자님들과 그동안 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을 담당해 오신 학교 선생님들, 전국미디어센터와 시민단체에서 미디어교육을 담당해온 강사님들의 노하우와 노력을 존중하고 활용해서, 대학에서 좀 더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국회의원 유은혜 보좌관
류지영

법안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05년 12월29일 제정되고, 다음해인 2006년 6월30일부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시행 이후, 현재 5,300명의 예술강사가 배출되었고 학교 및 사회현장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시 이 법을 추진하면서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측면과 아울러 미래의 예술소비자를 키워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라고 공감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추진을 시작하는 <미디어교육지원법>도 당장에 미디어교육지원의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미디어교육을 시작하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긴 안목으로 보면 지금과는 매우 다른 시민들이 미래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법안이라는 의미도 매우 중요하다.

방송과 신문 등 전통적 미디어뿐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에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프레임과 이슈들에 대해 일찍부터 선구안을 키우고 비판적 사유능력을 함양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해 미디어교육을 받은 세대

들이 구성할 우리 사회의 미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민주주의, 훨씬 더 활발한 소통의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법안의 발의와 처리의 과정이 결코 국회 안에서 진행되는 절차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법안은 가장 견고한 제도이다. 법안을 통해 행정행위의 최고 권위가 부여되고, 정책과 하위 사업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예산)이 편성된다. 뿐만 아니라 처벌도 동반되어 강제성이 부여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안은 그 법안의 수혜가 되는 사람들의 광범위한 공감과 지지를 얻는 과정이 중요하고 처벌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억울함이 없어야 하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이법은 미디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해당 학계에 계신 분들에게도 중요한 법안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을 통해서 수혜를 입게 되는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더욱 중요한 법이다. 사회적 측면과 가치적 측면에서 보자면 비판적 시각과 균형적 안목을 통한 민주시민의 양성을 통해 더 민주적인 우리 미래사회를 열어나가는 큰 관문이 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의 추진과정에서 학생과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 법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공유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노력과 과정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안의 처리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예방하여 통과 가능성에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법이 통과되어 실제 집행되는 단계에서도 주도권경쟁 등 부정적 요소들이 제거되고 오롯이 긍정적 효과만을 위해 전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촛불광장을 통해 시민주권의식이 집단적으로 고양되고, 직접 정치참여의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전환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정치와 행정의 집행방식은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제대로 된 거버넌스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의 발의와 처리, 그리고 집행의 과정 모두가 시민사회 나아가 국민과 협력하여 추진되는 전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토론]

덕성여고 교사
박한철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확산이 거듭나게 된 것은 학교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부터다. 학교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은 미디어교육의 이상적 실현기관으로서 학교라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요컨대, 어느 사회에서나 학교는 대표적인 공교육 기관으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는 사회적 체제의 하나로서 차세대를 위한 사회화 기능을 하는 곳이며, 또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훈련을 하는 곳이다.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역시 학교라는 공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화된 미디어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학교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인적자원, 교과서,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지원, 재정지원, 교사연수, 미디어교육 경연대회 등을 총괄하는 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에 근거한 미디어교육지원센터가 추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교 미디어교육의 기본방향 수립
- 국가교육과정과 연계한 중장기 및 연도별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계획 수립(학교급별)
- 교원에 대한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방안 모색
- 학교 미디어교육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시행계획 수립

- 미디어교육 교과서 및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미디어 교육관련 콘텐츠들의 웹리소스 구축(모바일 리소스 포함)
- 학교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확충과 관리방안 확립
- 학교 미디어교육지원 예산확보 방안 및 지출계획 수립
-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미디어교육지원센터의 연계방안 수립
-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육연수원 미디어교육 교과목 개설지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다양한 미디어와 정보 기술을 통해 쏟아지는 방대한 양과 형태의 정보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학교미디어교육이 필수적이다.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우리가 되길 기원해 본다.

[토론]

미디어교육 강사
부산 민언련
복성경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추진에 대한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의견

1. 미디어교육지원정책에 대한 생각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창의적으로 사용할 능력을 키워야 함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누구나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크게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안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학교 밖 다시말해 사회 영역에서의 미디어교육 지원 정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청자단체,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미디어센터, 다양한 미디어센터, 복지관, 학교 등에서 미디어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각자도생의 형태를 띠고 있다. 미디어교육 중요성과 필요성에 걸맞는 정책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2. 미디어교육지원법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에도 전국에는 다양한 미디어교육 교강사가 있다. 부산의 경우 지역 시민사회에서 수년간 미디어교육을 해온 교강사와 2005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현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양성하거나 선발한 미디어교육교강사가 있다. 실제 이들의

미디어교육이 한국사회의 미디어교육이 되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더 다양한 미디어교육이 해마다 새롭게 양산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미디어교육사' 관련 조항을 볼 때 현재 활동 중인 미디어교육 교강사를 어떻게 수렴할지 궁금하다. 당시 미디어교육사의 자격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미디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미디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한다'고 해 현장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불안감, 의문점이 컸다. 이들의 경력과 경험을 어떻게 보장하고 연계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앞으로 미디어교육 교강사를 양성하는 기관, 내용, 절차를 어떻게 두는가도 중요하다. 미디어교육의 본질과 한국적 상황, 지역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미디어교육 전반을 지원 기관의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나 각 공공미디어센터는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미디어교육 성패는 물론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활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미디어교육 대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교육 교강사에게 '강사 윤리 강령'을 실천할 것을 서약하라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윤리 강령에는 교강사의 자유로운 교수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일방적으로 마련한 품격을 강조했다. 이런 무리한 행보는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입김이 있었다.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여지가 있는 친정부적 낙하산 인사였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원 기관부터 특정인, 특정단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기관 운영 역시 그러해야 한다.

미디어교육 지원 기관, 담당 기관, 미디어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미디어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 미디어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연구 기관이 신설되고 현장 교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 기존 공공미디어센터도 그러한 기능을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미디어교육 관련 자료와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빙 사업도 시급하다.

5. 사회영역의 미디어교육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별로 미디어교육을 총화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거점 시설과 논의 체계가 필요하다. 학계, 시민사회, 미디어교육단체나 시설, 강사들의 열린 논의의 장이 법으로 강제되었으면 한다. 누구나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곧 민주시민의 양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 단위의 논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디어교육 교강사도 교육의 주체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



[토론]

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실장
윤정록

1.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2002년 영화진흥위원회가 설립한 미디액트를 시작으로 40여 개의 미디어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15개소), 지역자치단체(9개소), 방송통신위원회(7개소), 방송문화진흥회(5개소), 영화진흥위원회(2개소), 민간(2개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조금씩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미디어센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와 미디어교육의 물적 기반을 형성해가고 있다.

영상매체가 주된 언어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재 새로운 형태의 영상언어교육이 필요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문화기반이다. 이렇게 미디어센터 대부분은 시민들의 미디어활용능력 향상, 참여적 미디어활동 활성화, 미디어 접근권 확대를 목표로 하는 미디어교육을 포함해 상영, 제작지원, 네트워크, 퍼블릭 액세스 등의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2. 미디어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퍼블릭 액세스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은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미디어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읽는 능력, 미디어를 통해 창의적 표현이 가능하게 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소통과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때문에 미디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액세스를 통한 사회적 공유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센터 → 미디어교육 → 결과물 →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 방송참여

실제 미디어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결과물이 참여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미디어 전반에 대한 교육이 센터들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미디어센터를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곳' 이라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영상의 제작과정을 익히고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사회적으로 소통해야만 미디어활용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센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주도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권리 획득"과 "미디어문화 향유" 그리고 "미디어 참여"라는 가치를 두고 미디어교육을 기반으로 한 퍼블릭 액세스의 실현을 중점에 두었다. 이는 미디어교육이 읽기와 제작교육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사회적 참여를 통해 미디어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3. 미디어교육의 명확한 정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시작되어 30여년의 미디어교육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는 아직 미디어교육을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미디어교육은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소한 "미디어교육은 공공의 영역"이여야 한다는 제도적 설정이 시급하다.
현재 많은 미디어센터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영주체별로 미디어교육을 각기 다르게 정의하는 것이 근본적 원인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없는 현재 미디어센터들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공적 목적을 띤 미디어교육이 아닌 미디어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으로 오인되는 교육현장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 미디어교육지원법은 미디어교육의 사회적 공공성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여 미디어산업과 구분되는 공적미디어영역을 확산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4. 미디어교육에서의 공영방송역할

2006년 개정된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내용을 보면 KBS는 시청자 참여프로

그램을 월 100분 이상 편성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KBS는 <열린채널>을 매주 30분 편성해 방송하고 있다. 하지만 평일 오후 2시로(주로 재방송시간) 편성되어 시민들의 시청이 쉽지 않아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매우 소극적이다. 또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일부 영상물에 대해 방송편성을 불허하고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미디어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선 미디어교육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방송법개정을 통해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을 더욱 견고히 해야만 한다.

공영방송 MBC의 경우 방문진 이사 선임방식의 문제로 인해 공적 역할에 대해 많은 문제가 표면화 되었다. 공익이라는 이념 하에 요구되는 방송의 모습인 여론·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다양하고 다원적인 집단의 참여와 의견개진이 보장되는 사상의 민주적 공론영역이 사라지고 있다. MBC는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익의 일부를 시청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디어교육 예산을 지원하고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문진은 지역MBC와 함께 미디어센터를 설립해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권 집권 이후 미디어교육을 이념교육이라 규정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지역MBC는 경영난을 이유로 유일하다 시피한 시청자대상 공익사업인 미디어센터를 폐쇄 하거나 폐쇄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디어는 공공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이나 정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시청자를 대상화할 뿐 방송 권력을 시청자와 배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방송의 공적 책무는 비단 '공정방송실현'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시민사회가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소통과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 또한 공영방송의 중대한 역할이다. 방송사는 시민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해서 미디어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공유하고 퍼블릭 액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토론]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윤정주

어린이·청소년 미디어교육의 필요성과 미디어교육 지원의 문제점

○ 어린이 청소년 미디어교육 왜 필요한가

-요즘처럼 뉴스가 넘쳐나는 때는 없는 것 같음. 뉴스는 공신력 있는 방송사, 신문사의 몇 명의 특정 전문화된 뉴스 생산자가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과장을 하자면 전 국민이 뉴스 생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정보를 생산해 내고 있는 실정임. 이는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이 뉴스 소비자 이며 생산자 즉, 프로슈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또한 미디어를 생산해내는 정보 생산자가 따로 있지 않음을 잘 보여줌.

-이는 지금 막 생겨난 현상이 아닐 뿐 더러 성인에게 국한된 내용은 더더군다나 아님. PC가 보편화되고 스마트 폰이 급속도로 보급 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활발해 지고 있음.

지금 아이들은 태어난 때부터 미디어와 친숙한 세대임. 이미 아이들은 3살이 지나면 스스로 스마트 폰을 조작 할 수 있고 유튜브 등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영상을 선택하여 볼 수 있음. 그리고 한글은 모르더라도 간단한 영상을 찍고 이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터득함.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와 친숙한 아이들에게 미디어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미디어를 친숙하게 다루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 •방송사가 생산해 내는 프로그램 속의 성차별 및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비하와 차별
- •뉴스의 불공정성
- •광고와 뮤직비디오의 문제
-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도 몸캠을 찍어 보내면 안되는 이유
- •자신의 신상 정보를 아무데나 보내면 안되는 이유
- •몰카가 왜 범죄행위인지
- •단체 카톡방에서 한 아이를 왕따 시키고 괴롭히는 행위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문제
-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성차별을 비롯한 소수자 차별의 문제
- •미디어가 어떤 상업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무엇을 조심해야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이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의 절실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동시에 세대별 미디어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디어와 친숙한 아이들에게 부모와 선생님은 아예 미디어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이를 비판적으로 보고 올바른 내용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교육, 즉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정말 필요함.

○ 방통위 미디어교육 지원의 문제점

-미디어교육의 지원은 방송통신발전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항 7을 보면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으로 명시 되어 있음. 미디어교육은 (구)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전파진흥원 등에 위탁을 주어 시청자지원 사업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이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미디어교육 지원에 대해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다는 제작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임. 미디어 재단에 들어가 보면 <미디어교육 소개>란에도 제작교육을 하고 있는 사진만이 보여져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음. 2015년 미디어교육 명목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곳을 보면 17개 선정 단체 중 15군데가 영상 제작을 주로 교육하는 곳이었음.

-또 다른 문제는 미디어교육을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임. 구)콘텐츠진흥원에서 미디어교육사를 양성하면서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교육 단체에 미디어교육사를 우선 강의를 배정하도록 함. 이는 그동안 미디어교육 교안을 자체 개발하고 강사를 양성해온 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은 단적인 예임.

-또 다른 문제는 턱없이 낮은 지원금임. 2015년 지원금을 보면 17개 단체에 총 1억만을 지원함. 가장 많이 받은 단체가 700만 원 정도임. 이는 미디어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협소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미디어 교육이 아닌 일회성 교육으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함.

○ 미디어교육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관계 기관에서 변화하는 미디어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해 및 활용 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 또한 이제 미디어 이용자는 누군가에 의해 생산된 미디어를 일방적으로 소비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내용을 생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함.

-다양한 단체, 학교 등이 다양한 내용으로 자유롭게 미디어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특히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 양성의 측면에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미디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그리고 무엇보다 미디어교육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임.

-실질적으로 미디어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허브 기관 설립이 필요함.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그러한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2년여의 활동을 보면 이사장의 비위사실만 눈에 띄고 실질적인 미디어교육의 허브 역할을 찾기 힘듦. 따라서 다양한 미디어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미디어교육을 하는 단위들이 활발하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의 허브 기관 설립이 절실함.



참고자료1.

미디어교육지원법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00

발의연월일: 2013. 9. 17.

발 의 자: 김희정·유기준·문정림·조명철·한선교·박인숙·김무성·김세연·이진복·나성린·이만우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계·기술 및 통신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새로운 미디어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미디어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그 이용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나 지식을 상대에게 전달하거나 사회통념

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 파급효과로 인해 이용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 미디어 사회에서 미디어의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미디어에 대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용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시민단체, 언론계 및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미디어교육이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인 기반은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임.

이에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디어교육 지원정책을 총괄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미디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및 기타 미디어교육 진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미디어교육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역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미디어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학교의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을 반영하고,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학교의 장이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을 학교미디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시설·단체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며, 사회미디어교육에 학교시설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기관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

법률 제 호

미디어교육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디어와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창의적 활용 능력을 제고하여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대중에게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제2호에 따른 인터넷 신문 및 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마. 그 밖에 대중에게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미디어콘텐츠”란 미디어가 생산하거나 유통시키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3.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와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창의적 활용능력 증진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통능력을 제고하는 교육을 말하고,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학교미디어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미디어교육

나. 사회미디어교육: 학교미디어교육을 제외한 미디어교육

4. “미디어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미디어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미디어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나. 제3호가목에 따른 학교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다. 제4호에 따른 교육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

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마.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

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사. 「청소년활동진흥법」 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아.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시설 중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주민자치센터, 교육시설 또는 미디어센터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7.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이란 교원 외에 미디어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미디어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보장·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디어교육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미디어교육 지원정책의 총괄 및 계획수립 등

제5조(미디어교육 지원정책의 총괄) 미디어교육 지원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제6조(미디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디어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교육에 관한 기본방향
2.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민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미디어교육진흥기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을 미디어교육진흥기관(이하 "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2.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 기타 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 미디어교육 진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법인·기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미디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미디어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진흥기관 및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디어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2.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협력체제 구축·운영
3.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또는 교재 개발
4. 교사 및 학부모 등의 연수 지원
5. 미디어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그 관련 사업
6.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7. 그 밖에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2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등

제10조(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도 교육감은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교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미디어교육에 관한 국가 또는 시·도 교육감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학교미디어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또는 활동에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수준 높은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미디어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각종 미디어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단체의 미디어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회미디어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또는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기관 또는 지역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또는 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시설 등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디어교육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지역센터·교육시설 또는 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미디어교육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진흥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기관,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대학 등을 미디어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교육기관에 대하여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전문인력교육기관의 지정기준, 교육 과정 및 내용, 교육비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①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교육기관을 지정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전문인력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미디어교육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미디어교육전문인력의 우선적 활용 노력)

① 교육시설의 경영자 또는 교육단체는 미디어교육을 할 경우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미디어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제정안 제10조(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는 교육부장관은 학교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고, 시·도 교육감은 학교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 제11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 수준 높은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미디어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각종 미디어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제정안 제12조(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단체의 미디어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13조(경비의 보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기관 또는 지역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교육시설 또는 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정안 제15조(미디어교육전문인력의 양성 등)는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미디어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안의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으로 한다.

(2) 제정안 제10조의 학교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시설·장비의 지원은 시·도 교육청의 기존 교수·학습활동 사업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정안 제13조의 지역센터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하므로 지원 예산도 분담할 것이 예상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액으로 추계한다.

(4) 제정안 제14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지역센터·교육시설 또는 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가 미미하고 진흥기관의 기존 미디어교육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추계하지 않는다.

(5)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액은 [표1]과 같이 2015년 15,640백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79,671백만원으로 추정된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2015~2019**년**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a)	2,565	2,632	2,698	2,765	2,834	13,494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b)	13,075	13,155	13,234	13,315	13,398	66,177
추가재정 소요액(a+b)	15,640	15,787	15,932	16,080	16,232	79,6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김희정의원실 이승훈비서관(02-788-2181)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사회 미디어교육 활성화에는 미디어교육 진흥기관 및 지역미디어센터 운영,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비용추계방법 〉

추가 재정소요 =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비용 +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비용

2.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가.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제정안 제10조(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는 교육부장관은 학교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

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고, 시·도 교육감은 학교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 제11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 수준 높은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미디어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각종 미디어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른 학교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시설·장비의 지원은 시·도 교육청의 기존 교수·학습활동 사업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정안의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 제공, 학교 미디어교육 활동 지원은 제9조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미디어교육활성화를 위해 수행 중인 사업과 매우 유사하므로 동 재단의 사업 중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예산으로 예산 규모를 추정하기로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3년도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관련 사업 예산은 다음 [표2]와 같다.

[표 2] **한국언론진흥재단 2013년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관련 예산**[2)]

(단위: 백만원)

	교사연수	청소년연수	계
2013년 예산	320 -교사연수 150 -온라인 교사연수 40 -NIE 전국대회 60 -학부모 NIE 연수 70	1,390 -NIE 거점학교 운영 800 -NIE 교재개발 230 -NIE 워크북 제작 40 -신문제작 체험 교육 250 -원격프로그램 개발 70	1,710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3년 예산계획서 중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관련 예산 재구성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예산이 제9조의 미디어교육 진흥기관 사업비에 기 반영 중이고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차원이므로 현재 반영 예산의 50%를 반영한 값에 연도별 NABO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3)]을 적용

2) 예산항목 표기는 교사연수, 청소년연수로 되어 있으나 연수 예산 외에 거점학교 운영, 교재 개발 등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을 포함하고 있음

3)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3.4.23. p.9. 2014년 2.6%, 2015년 2.7%, 2016년 2.6%, 2017년 이후는 2.5% 적용

하여 추가 소요예산 규모로 산출한다.

미디어교육 관련 주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이므로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표3]과 같이 2015년 2,565백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13,49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추가 재정소요 추정치**: 2015~2019**년**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2,565	2,632	2,698	2,765	2,834	13,494

나.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제정안 제12조(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단체의 미디어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13조(경비의 보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기관 또는 지역센터[4]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교육시설 또는 교육단체[5]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4) 제9조(미디어교육진흥기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을 미디어교육진흥기관(이하 "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2.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 기타 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 미디어교육 진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법인·기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미디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미디어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미디어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미디어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미디어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나. 제3호가목에 따른 학교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다. 제4호에 따른 교육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
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마.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
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아.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시설 중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정안 제15조(미디어교육전문인력의 양성 등)는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미디어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정안 제9조의 진흥기관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앙단위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제13조에 따른 진흥기관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이미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사업을 보다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에 있으므로 재단의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예산으로 추가 소요 규모를 추정하기로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3년도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관련 사업 예산은 다음 [표4]와 같다.

[**표** 4] **한국언론진흥재단** 2013**년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관련 예산**[6)]

(단위: 백만원)

	NIE활성화	NIE 프로그램 공모	계
2013년 예산	1,800 -미디어교육 포털 운영 120 -미디어강사 파견 360 -토요 NIE교실 운영 750 -NIE 광고교육 200 -기타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370	250 -언론사 NIE공모 지원	2,050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3년 예산계획서 중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관련 예산 재구성

사회 미디어교육 활성화 사업은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차원이므로 현 예산의 50%를 추가로 반영하고, 연도별 소비자물가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주민자치센터, 교육시설 또는 미디어센터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예산항목 표기는 교사연수, 청소년연수로 되어 있으나 연수 예산 외에 거점학교 운영, 교재 개발 등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을 포함하고 있음.

상승률 전망을 적용하여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흥기관을 포함하여 추산하면 중앙단위의 추가 재정 소요는 [표 5]와 같이 2015년 3,075백만원을 비롯, 향후 5년간 16,17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진흥기관의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재정소요 추정치: 2015~2019년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진흥기관의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3,075	3,155	3,234	3,315	3,398	16,177

지역센터의 경우 신규 기관이기는 하나 중앙의 진흥기관처럼 지방에서 미디어교육 진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므로 기관을 새로 개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미디어교육 활동 기관 중 적정한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 보다는 사업비 분야가 대폭 늘어날 것이며, 시·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지방정부도 일정부분 분담토록 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시행 초기의 기존 미디어교육 활동 기관에 대한 지원임을 감안하여 센터별 연간 50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가상한다면 시·도별 1개 센터 개설을 목표로 계산할 경우 연간 8,00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단체를 포함하여 미디어교육시설과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은 법 제9조의 진흥기관과 지역센터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이미 추가 계상한 바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로 책정하지 않는다.

한편 법 제15조에서는 미디어교육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디어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 미디어교육 활동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므로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연수

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운영할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주를 이룰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동 조 제4항에는 지정된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인력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강사료를 시간당 10만원, 1일 8시간, 월 25일 교육, 1년 10개월로 계산할 경우 강사료로 연간 200백만원이 소요된다.이외에도 인건비와 기타 교육에 소요되는 비품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 연간 250백만원과 시·도별 1개소 지정을 목표로 할 경우 연간 4,000백만원이 되나 이 중 절반을 교육생으로부터 충당하는 것을 가상하면 연간 2,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재정소요액 추정치**: 2015~2019**년**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13,075 -진흥기관 지원 3,075 -지역센터 지원 8,000 -교육기관 지원 2,000	13,155 -진흥기관 지원 3,155 -지역센터 지원 8,000 -교육기관 지원 2,000	13,234 -진흥기관 지원 3,234 -지역센터 지원 8,000 -교육기관 지원 2,000	13,315 -진흥기관 지원 3,315 -지역센터 지원 8,000 -교육기관 지원 2,000	13,398 -진흥기관 지원 3,398 -지역센터 지원 8,000 -교육기관 지원 2,000	66,177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액은 [표7]과 같이 2015년 15,640백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79,671백만원으로 추정된다.

[표 7]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2015~2019**년**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a)	2,565	2,632	2,698	2,765	2,834	13,494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b)	13,075	13,155	13,234	13,315	13,398	66,177
추가재정 소요액(a+b)	15,640	15,707	15,773	15,840	15,909	79,6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자료2.

미디어교육지원법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2

발의연월일: 2012. 8. 3.

발 의 자: 최민희·전정희·윤후덕·이상민·배기운·박홍근·윤호중·배재정·강동원·김현미·민홍철·김경협·홍종학·김윤덕·박원석·김관영·유대운·최동익·황주홍·김동철·한명숙·정청래·김재윤·박남춘·남인순·유승희·김상희·도종환·유기홍·홍의락 의원(30인)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전달이나 여론형성 기능뿐만 아니라, 오락매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일상생활에 있어 미디어를 떼놓을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막대함.

또한 기술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하고 갖가지 부작용의 사례가 속출하는 등 국민에게 미디어 전반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미 학계나 교육현장,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논의와 실천들이 확산되었으나 이를 제도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에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이에 미디어교육을 활성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미디어교육지원법을 제정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디어교육을 활성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디어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활용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미디어교육”이라 하고 이를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으로 구분함(안 제2조).

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합의하여 5년마다 미디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학교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 교과에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창의적재량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미디어교육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질 높은 사회미디어교육을 위하여 미디어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미디어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하에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사.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미디어교육지원협의회를 설치함(안 제11조).

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미디어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미디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미디어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미디어교육사의 양성을 위하여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시설, 교육단체,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미디어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교육시설과 교육단체에 미디어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디어교육사로 하여금 학교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법률 제 호

미디어교육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디어교육을 활성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방송·통신·신문·잡지·출판·영화·광고·인터넷 등 대중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행위 또는 그 내용 전반을 말한다.
2. “미디어교육”이라 함은 미디어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활용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미디어교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행하여지는 미디어교육
   나. 사회미디어교육: 학교미디어교육을 제외한 미디어교육
3.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미디어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

원회의 영상미디어센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미디어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미디어교육을 주된 기능으로 실시하거나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미디어교육사”란 미디어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① 미디어교육은 국민이 미디어의 기능과 효과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미디어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미디어교육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교육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디어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제6조(미디어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합의하여 5년마다 미디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미디어교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교육의 기본방향
2. 중장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3. 교원에 대한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미디어교육사의 배치 및 처우
5. 학교미디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6.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7.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과의 연계
8. 그 밖에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의 미디어교육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미디어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및 예산의 증액 등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 ① 학교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 교과에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할 교과와 반영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1항에 따라 미디어교육을 반영한 교과 외의 교과에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미디어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창의적재량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시·도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학교미디어교육을 실시할 때 제14조에 따른 미디어교육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⑤ 관할 시·도 교육청은 제3항에 따른 학교미디어교육의 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종합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도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 시·도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원에 대한 미디어교육 연수
2. 미디어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
3. 학교미디어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축제·발표회 등 학교 내 활동 및 행사

제8조(사회미디어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시설·교육단체의 설립·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미디어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연구·교육활동 및 시설·장비
2. 사회미디어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축제·발표회 등 활동 및 행사

③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사회미디어교육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사회미디어교육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⑤ 교육단체는 사회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연구·학습·활동 및 행사에 관련된 경우 교육시설의 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의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정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미디어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미디어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업무로 행한다.

1. 미디어교육 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2. 미디어교육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미디어교육 교과과정에 관한 자문
4. 미디어교육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미디어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심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미디어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미디어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교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학부모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미디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6. 그 밖에 미디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가 호선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합의하여 임명하되, 부위원장은 학교미디어교육 관련 위원과 사회미디어교육 관련 위원 가운데 각각 1명을 임명한다.

④ 위원회에는 학교미디어교육소위원회와 사회미디어교육소위원회를 두고 2명의 부위원장을 각각 학교미디어교육소위원회 위원장과 사회미디어교육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과 상근직원을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미디어교육진흥협의회) ①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미디어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미디어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미디어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미디어교육 관련 교원 및 미디어교육사로서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시·도의 미디어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미디어 종사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미디어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시설 등의 평가) ① 위원회는 미디어교육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각 호의 기준마다 계량화된 평가를 100분의 50 이상 반영하도록 한다.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미디어교육사의 역량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4. 수용자의 평가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미디어교육사 양성

제14조(미디어교육사의 자격)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미디어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미디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디어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미디어교육사는 미디어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미디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미디어교육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미디어교육사가 될 수 없다.

제15조(미디어교육사 교육기관)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시설, 교육단체,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미디어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교육시설과 교육단체,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 중 미디어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곳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 미디어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4.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미디어교육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생에게 받을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미디어교육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미디어교육사 교육을 정지시키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미디어교육사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미디어교육사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해당 교육을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그 밖에 미디어교육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미디어교육사의 교육기회제공 등) ① 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교육단체는 미디어교육사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기회의 제공과 연구 및 활동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미디어교육사의 배치) ① 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교육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과 교육단체에 배치된 미디어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미디어교육사의 학교미디어교육 지원) ① 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디어교육사로 하여금 학교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교육사는 제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학교 교과과정 및 학교미디어교육 활동과 행사, 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미디어교육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미디어교육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미디어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합의하여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제17조에 따른 미디어교육사의 배치와 제18조에 따른 미디어교육사의 학교미디어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미디어교육사의 학교미디어교육 지원

제정안 제7조(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는 시·도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미디어교육 관련 연수, 연구 및 각종 활동과 학교미디어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학교 내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18조(미디어교육사의 학교미디어교육 지원)는 학교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교육사는 학교 교과과정 및 학교미디어교육 활동 등을 담당하거나 미디어교육 관련 교원의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나.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미디어교육사의 배치

제정안 제8조(사회미디어교육의 활성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교육활동 및 시설·장비와 사회미디어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노인·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정 등의 미디어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미디어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제정안 제17조(미디어교육사의 배치)는 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교육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과 교육단체에 배치된 미디어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 제17조 및 제18조에 관한 사항은 2014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의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한다.

(2) 제정안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 및 지역미디어교육진흥협의회에 두는 위원은 비상임이며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도에서 기존의 조직을 활용한 운영이 가능하므로, 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정안 제13조에 따른 미디어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소요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추계하지 않는다.

(4) 제정안 제15조에 따른 미디어교육사 교육기관 지원과 제16조에 따른 미디어교육사 교육기회 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권익보호 활동지원 사업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한 영상산업 육성 사업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추계하지 않는다.

(5)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액으로 추계한다.

(6)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액은 [표 1]과 같이 2014년 792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4,170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2014~2018**년**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a)	606	623	638	654	671	3,192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b)	186	191	196	200	205	978
계(a+b)	792	814	834	854	876	4,1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과

과　　장　정 영 진

예산분석관　임 준 기 (02-788-4646, jangsan@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사회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비용추계방법** 〉

추가 재정소요 =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비용 +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비용

2. **학교미디어교육 및 사회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등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가.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미디어교육사의 학교미디어교육 지원

제정안 제7조(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7]에 따른 학교 교과에

미디어교육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시·도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미디어교육 연수, 교원이 수행하는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및 각종 활동과 학교미디어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축제·발표회 등 학교 내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18조(미디어교육사의 학교미디어교육 지원)는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 및 지역미디어교육진흥협의회, 미디어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디어교육사로 하여금 학교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정안에 따른 학교미디어교육과 관련하여 시설·장비의 지원, 미디어교육 관련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은 시·도교육청의 인적자원운용 및 교수·학습활동 사업 예산으로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교미디어교육, 학교미디어교육 관련 학교의 활동 및 행사, 미디어교육사의 학교미디어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정안과 유사한 체계와 사업내용을 갖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을 토대로 하여 산출하기로 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2012년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은 [표 2]와 같이 638억원이다.

[표 2]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현황: 2012년

(단위: 백만원)

7)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행기관(사업명, 소관 부처)	금액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6,43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꽃씨앗학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5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토요문화학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5,0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지원, 시·도교육청)	23,8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창의경영학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250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강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5,813
	계	63,8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사업이 신규 사업임을 고려하여 2012년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산(638억원)의 90%를 반영한 값에 연도별 NABO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망[8]을 적용하는 경우,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표 3]과 같이 2014년 606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192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3]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추가 재정소요 추정치**: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60,640	62,277	63,834	65,430	67,065	319,24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미디어교육사의 배치

제정안 제8조(사회미디어교육의 활성화)는 미디어교육시설[9]·미디어교육단체[10]

8)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2.5, p. 8. 2013년 2.7%, 2014년 2.8%, 2015년 2.7%, 2016년 이후는 2.5%임.

9) 미디어교육시설은 「방송법」 제90조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영상미디어센터 및 그

의 설립·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미디어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미디어교육 관련 연구・교육활동 및 시설·장비와 사회미디어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축제·발표회 등의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정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미디어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미디어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17조(미디어교육사의 배치)는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 및 지역미디어교육진흥협의회,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디어교육사로 하여금 학교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배치된 미디어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사회미디어교육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시설·장비, 활동 및 행사 지원, 미디어 취약계층의 보호・지원, 미디어교육사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정안과 유사한 체계와 사업내용으로 갖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을 토대로 하여 산출하기로 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2012년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은 [표 4]와 같이 195억원이다.

[표 4]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현황: 2012년

(단위: 백만원)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함.

10) 미디어교육단체는 미디어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집행기관(사업명, 소관 부처)	금액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2,0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608
	문화체육관광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000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945
	계	19,55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사업이 신규 사업임을 고려하여 2012년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산(195억원)의 90%를 반영한 값에 연도별 NABO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망[11]을 적용하는 경우,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표 5]와 같이 2014년 186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978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5]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재정소요액 추정치**: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18,579	19,081	19,558	20,046	20,548	97,81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액은 [표 6]과 같이 2014년 792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4,170억원으로 추정된다.

11)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2.5, p. 8. 2013년 2.7%, 2014년 2.8%, 2015년 2.7%, 2016년 이후는 2.5%임.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a)	60,640	62,277	63,834	65,430	67,065	319,246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b)	18,579	19,081	19,558	20,046	20,548	97,812
추가재정 소요액(a+b)	79,219	81,358	83,392	85,476	87,613	417,05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